

「2025년 글로벌 쇼룸(말레이시아)」

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

국내 소상공인의 제품 현지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
「2025년 글로벌쇼룸」 참여 희망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.

2025년 9월 25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※ (필독)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

-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“소상공인24(www.sbiz24.kr)”를 통해 신청·접수 가능합니다.
- ※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,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발생사유에 관계없이(시스템 오류 등) **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**합니다.
-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, 부정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될 수 있으며, 향후 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(브로커, 직원 등) 부당 개입(대리신청, 기타 수수료 요구 등) 적발 시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정식 통관을 위한 필수 인증 및 등록 미완료 시,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(2P, 6P 주요 선정취소 사유 확인 필수)
- 수행기관 : (주)리프이노베이션

1. 모집개요

□ **지원대상** : ①해외플랫폼 既 입점, ②해외 수출·판매 가능제품 보유(단, 현지 쇼룸 운영 전 해외플랫폼 입점 필수)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소상공인

○ (취급품목) 화장품, 식품

※ 無 할랄 구역 운영 예정으로, 할랄인증 취득이 필수는 아니나 인증 보유 시 평가 우대

○ 사업선정 후,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

< 주요 선정 취소 사유 >

- ① 팝업스토어 시작 전, 온라인 기획전 운영 플랫폼 미입점 시 선정취소
- ② **정식통관을** 거칠 수 있는 **절차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** 선정취소
- (화장품) 통관 전, NPRA 사전통지 (식품) 현지 규정에 따른 라벨링 기준 준수 등
- ③ 쇼룸 운영 국가 통관제재로 **판매 불가** 결정 시, 선정취소
- ④ 그 외 공고문 7쪽 '선정 취소사유' 및 7~8쪽 '유의사항' 확인 필수

□ **운영국가** : 말레이시아(쿠알라룸푸르)

□ **지원규모** : 소상공인 15개사 내외 * 규모 변동가능

□ **주요 지원내용**

- ① 해외 현지 오프라인 팝업스토어(제품 전시 및 판매) 운영
- ② 수행기관 보유 바이어 POOL을 활용한 상담 매칭 지원
- ③ 유튜버, 틱톡커 등 현지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(라이브방송 등)
- ④ 현지 대표 플랫폼(쇼피 등) 내 온라인 팝업스토어(기획전) 운영
- ⑤ 통역, 물류, 서류작성 등 행정사항 일부 ※ [첨부1]정부지원·자부담 항목 확인

2. 세부 지원 내용

□ 운영 내용

- ※ **현지 참석 여부는 선택사항**으로, 물품만 현지로 배송하는 형태로도 참여 가능
(단, 현지 참석시 체류비 일체는 소상공인 부담)
- ※ 선정 시, 3가지 항목 (팝업스토어, 바이어 상담회, 온라인 기획전) **참여 필수**

국가		말레이시아	비고
팝업 스토어	도시	쿠알라룸푸르	-
	주제	k-라이프스타일 체험	-
	취급품목	식품 및 뷰티제품	할랄인증 보유 시, 우대
	운영 기간	11. 29.(토) ~ 12. 7.(일)	변동가능
바이어 상담회	대상	선정 소상공인 30개사	현지 불참 시, 온라인 상담회 운영
	방식	온·오프라인 상담 운영	
	시기	12. 3.(수) ~ 12. 5.(금)	변동가능
온라인기획전	플랫폼	쇼피 등 현지 활용 플랫폼	선정 후, 입점 필수

□ 지원항목

- ※ 최종 선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주최하여 지원항목 및 운영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 안내 예정(**선정 시, 설명회 참석 필수**)

- (행정지원) 참가업체(사업 수혜자)가 쇼룸 운영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안내, 쇼룸 이후 후속 관리 등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
- (팝업스토어)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제품 전시, B2C거래 촉진 및 제품 홍보 지원(판매 전문 인력 상주 예정)
- (운영기간) 바이어 상담회 일정을 포함하여 **7일(주말 포함) 내외 운영**
* 팝업스토어 기간은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별도안내 예정)

- (바이어 미팅) 제안사가 보유한 바이어POOL 활용, 투자 상담 매칭 및 B2B 거래 촉진
 - 소상공인 대표 현지 불참 시, 온라인 미팅 또는 상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진행 ※ [첨부3] FAQ 6번 참고
- (현지 인플루언서 연계) 유튜버, 틱톡커 등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방문객 유입 및 구매 촉진
- (온라인기획전) 현지 대표 플랫폼(쇼피 등) 內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기획전(할인·쿠폰 등) 운영
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**신청대상** : ①소상공인확인서 보유기업, ②지원품목(화장품, 식품)으로 참가할 수 있는 소상공인

○ (지원제외)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한

- 통관 및 운송 중 어려움*이 예상되는 일부 품목 지원 불가

* 말레이시아 금지 성분 포함 또는 통관 사전 절차 미시행 제품 등

구 분	내 용
① 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[첨부5]
② 휴·폐업 및 부도	○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③ 세금 체납	○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④ 제외 품목	○ 해외 수입제품,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(준)대기업 제품 *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가능
⑤ 불공정 행위	○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
⑥ 기타	○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*(예시)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상이한 경우 등

□ **신청기간** : 2025. 9. 25.(목) ~ 10. 10.(금) 18:00까지

□ **신청방법** :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☐ **제출서류**

* 공공 마이데이터 조회 불가시 보완요청 가능

구분	연번	제출서류	비고
필수	1	글로벌 쇼룸 신청서	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
	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
	3	제품소개 카탈로그 (용량초과 시 메일 제출 / global@semas.or.kr)	신청 시, 첨부파일로 제출
	4	수출성장성 평가표(양식 1 활용)	
	5	글로벌 쇼룸 참가 동의서(양식 2 활용)	
	6	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	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(공단) 제공요구 시 생략 가능
	7	사업자등록증명원	
	8	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	
선택	9	수출실적증명서	신청 시, 첨부파일로 제출
	10	해외 특허, 인증 증명서	
	11	우대사항 증빙서류	

4. 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절차** : ①자격검증(적/부) → ②선정평가 → ③최종선정

□ **평가항목** : 아래 평가 항목에 따른 서면평가 실시

- **(자격검증)**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신청제한 대상 검증
- **(선정평가)**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 경쟁력, 우대사항 해당 여부 등 서면평가 실시,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정

< 평가 지표(안) >

평가항목		세부내용					배점
정량	직전년도 수출실적	금액	500만불 이상	100~500만불 미만	10~100만불 미만	10만불 미만	20
		배점	20	16	12	8	
	기업 경쟁력	• 해외 인증 또는 정부 인증 등 보유 건 수 (한 건당 5점) - 산업재산권(특허, 등), 해외규격인증 등 / 할랄인증 보유 시 우대					20
정성	진출 가능성	• 제품 경쟁력 및 차별성 : 품질, 가격 등					20
		• 시장 적합도 : 현지 수입제한, 필수 규격·인증 등 요건 충족 여부					15
	수출 노력도	• 신시장 개척 노력 : 현지 네트워크 보유, 온·오프라인 활동 여부 등					10
		• 쇼룸 참가 준비도 : 외국어 홍보자료, 시장조사 등 준비 현황					15
합 계							100
가 점							5
총 합 계							1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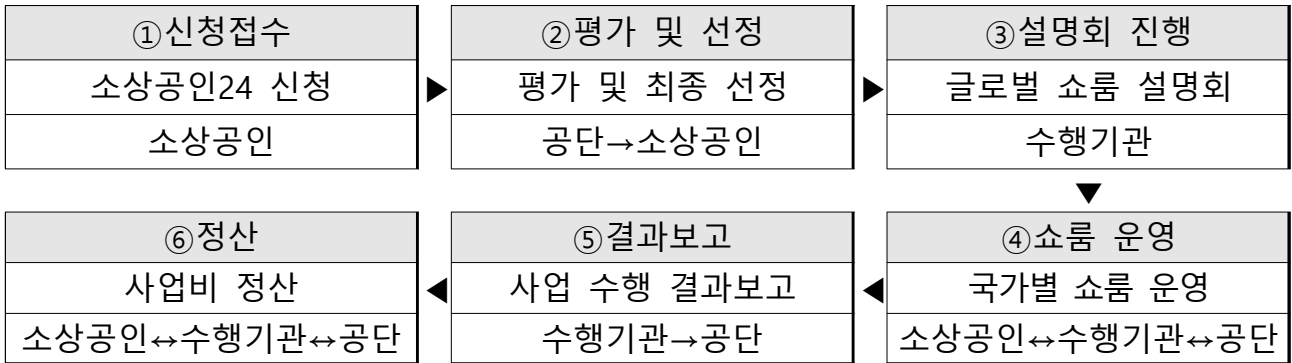
- **(우대사항)** 아래 항목 해당 시 가점부여(최대 5점)

no	항 목	배 점	증 병
1	브랜드K	우선 선정	수료증 또는 증명서
2	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		
3	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	해당 시 + 5점	증빙 미제출 * 공단 별도 확인
4	백년소상공인		
5	'22~'24년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- 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	
6	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(TOPS) 2단계 선정 소상공인		
7	글로벌패키지, 해외쇼핑몰 입점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		
8	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수료생	해당 시 + 3점	

< 동점 선정 기준 >

- ① 평가항목 '수출실적', '기업 경쟁력', '제품 경쟁력 및 차별성', '시장 적합도', '쇼룸 참가 준비도' 순 고득점 업체 선정
- ② ①결과에도 동점인 경우, 위원장 평가 점수 고득점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함

□ 진행절차



□ 선정취소 :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, 선정취소 될 수 있음

< 선정 취소 사유 >

- ① 선정 이후 신청 서류의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
- ② 선정 이후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
- ③ 선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- ④ 지원 사항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⑤ 위법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- ⑥ 특별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
- ⑦ 공단 또는 수행기관에 참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
- ⑧ 수행기관 등을 통해 대리신청 한 경우
- ⑨ 기타 공단에서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⑩ 팝업스토어 시작 전, 온라인 기획전 운영 플랫폼 미입점 시
- ⑪ **정식통관** 절차를 거칠 수 있는 **인증 또는 등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**
 - (화장품) 통관 전, NPRA 사전통지 (식품) 현지 규정에 따른 라벨링 기준 준수 등
- ⑫ 쇼룸 운영 국가 통관 제재로 **판매 불가 결정 시**

5. 유의사항

-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착오, 연락불가, 사업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은 공단(혹은 수행기관)에서 지지 않음

- ☐ 사업 선정 이후, 주최자 혹은 국가 통관 제재로 판매 취급 불가하여 참가가 어려울 경우 선정취소 및 차순위 대상자에게 참가 기회가 주어짐
- ☐ 참가 선정 업체는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(수출 계약실적, 현장 판매실적 등)에 성실히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
- ☐ 현지 참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함
 - * 여권 문제(미지참 등)로 당일 사업 참가 불가시 관련 비용 등 개인 책임
- ☐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해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,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*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
 - *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홍길동 외1 경우, '홍길동'으로 사업 신청
- ☐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,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연도 1회 신청 가능
- ☐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단은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무응답 및 거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6. 문의처

- ☐ 소상공인 24 시스템 문의 ☎ 1644-5302
- ☐ 사업관련 문의
 - 디지털지원실 온라인판로팀 ☎ 042-363-7823, 7824
 - (주)리프이노베이션

연락처	유선	이메일
	070-8633-0293	jjhyun1107@take-leap.com

- ☐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문의
 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 1357

[첨부]

1.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
2. 글로벌 쇼룸 FAQ
3. 소상공인 확인 방법
4.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5. (양식1) 수출성장성 평가표
6. (양식2) 글로벌 쇼룸 참가 동의서

첨부1

글로벌 쇼룸 정부지원 및 소상공인 자부담 항목

구 분	구성 항목	
정부 지원 (100%)	공통	▶ 공동 홍보비
		▶ 상담(바이어 미팅) 전문 인력 활용
		▶ 통역비 등
	팝업스토어	▶ 팝업스토어 설치·인테리어 비용
		▶ 팝업스토어 비품 임차료
		▶ 판매 전문 인력 활용비
		▶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비
		▶ 물품 운송·통관비
	온라인 기획전	▶ 온라인 기획전 기획·운영
		▶ 제품 할인 및 쿠폰비용
소상 공인 자부담 (100%)	▶ 체류비(항공료, 숙박비, 현지 식비, 현지 교통비 등)	
	▶ 여행자보험	
	▶ 개별 카탈로그, 현수막 등 장기적/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품 구매비	
	▶ 핸드캐리 운송 및 개인물품 운송 비용	
	▶ 업체 개별 광고비	
	▶ 은행, 카드사를 통해 송금/결제/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	
	▶ 그 외 본 사업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개인 일정 및 활동에 의한 비용	

첨부2

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

[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]

<사전준비>

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(소상공인 마당 아이디/비번 활용 가능)

※ 주 대표자 명의 가입(공동대표 신청 불가) 후 본인 인증 필수

② 기관·업체 정보등록

- 마이페이지 > 기관/업체정보 > 신규업체 등록/기존업체 등록 택1
-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/휴대전화번호/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

<신청절차>

① 지원사업신청 > ② 공고조회 > ③ 신청공고 클릭(공고명) > ④ 지원신청

[참고. (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 시)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]

○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

‘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’만 인정

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
- 소기업·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- 확인서 발급 : 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’ 접속
(URL : <https://sminfo.mss.go.kr/>)

* 발급문의처

-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-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02)3215-2674



1.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?

- ☐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.
- 단,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그 외 지원 제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,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.

2. 사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.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?

- ☐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<사전준비>

-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(소상공인 마당 아이디/비번 활용 가능)
※ 주 대표자 명의 가입(공동대표 신청 불가) 후 본인 인증 필수

② 기관·업체 정보등록

- 마이페이지 > 기관/업체정보 > 신규업체 등록/기존업체 등록 택1
-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/휴대전화번호/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

<신청절차>

- ① 지원사업신청 > ② 공고조회 > ③ 신청공고 클릭(공고명) > ④ 지원신청

3. 글로벌 쇼룸에 선정되면 어떤 것들을 지원받나요?

- ☐ 팝업스토어, 바이어 상담,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, 온라인 기획전을 지원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3p 참고 부탁드립니다.

4. 선정될 경우, 해외 현지로 직접 나가야 하나요?

- ☐ 아니요, 현지 참석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. 현지 참석으로 인한 비용(체류비, 여행자 보험비 등)은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5.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있나요?

- ☐ 글로벌 쇼룸 관련 비용은 모두 정부지원금으로 진행합니다.(첨부2 확인) 다만, 현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, 그로 인한 비용은 참여기업(소상공인)이 부담하셔야 하며, 그 외 업체 개별 비용(개별 홍보비, 개별 비품 등) 또한 참여기업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
6. 현지로 소상공인 대표가 가지 않을 경우, 팝업스토어와 바이어 미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
- ☐ 판매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상주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. 또한, 바이어 및 소상공인 대표가 직접 소통하길 원할 경우,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7. 소상공인 24 시스템에서 사업 진행 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- ☐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○ 확인경로 : 소상공인24 → 신청이력확인 → 지원사업신청

• 임시저장 : 작성중인 상태, 신청 전 수정가능	• 보완제출완료 : 보완요청에 대해 보완을 완료한 상태
• 신청완료 : 신청 완료, 신청 후 수정 불가능	• 보완완료 : 사업담당자가 보완을 확인 후 완료한 상태
• 접수완료 : 사업담당자가 확인 후 접수 완료한 상태	• 반려 : 문제가 발견되어 사업담당자가 반려한 상태
• 보완요청 : 사업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상태	※시스템 관련 문의 ☎ 1644-5302

8.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?

- ☐ 처리상태가 “보완요청” 상태일 시 보완이 가능하며, 보완요청내역에 따라 보완서류를 첨부합니다.
- 확인경로 : 소상공인24 → 신청이력확인 → 지원사업신청 → 신청내역 클릭 → 보완내역 확인 후 ‘보완’ → 서류 첨부 후 ‘보완완료’

9. 평가결과 선정되었습니다.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?

- ☐ 선정 축하드립니다. 선정이 되셨을 경우, 선정일자 기준 3주 이내 수행기관에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.

10. 평가 결과 탈락되었습니다. 재신청은 불가능한가요?

- ☐ 평가 결과 탈락되었다면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. 단, 다른 국가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쇼룸 모집공고에는 재신청가능합니다.
- * ex. 동남아 글로벌쇼룸 2차 모집공고 → 재신청 불가
(동남아 외) 글로벌쇼룸 모집공고 → 재신청 가능

11. 가점을 받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?

- ☐ 가점항목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(백년 소상공인) 지정서 발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골목형상점가육성팀(042-363-7609)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(로컬크리에이터)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업체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- (업체등록) ① 소상공인24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② 마이페이지 → ③ 기관/업체정보 클릭 → ④ 신규 업체등록 클릭 → ⑤ K-Startup에서 '20년 ~'24년 「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」을 수혜 받은 업체정보(사업자등록번호) 등록

<유의사항>

(개인) 회원가입하신 분의 성함과 사업자대표 성함이 동일한 경우만 기관/업체 정보 등록 가능

(법인) 회원가입하신 분의 성함과 사업자대표 성함이 달라도 등록 가능
(법인 실무자 또한 기관/업체정보 등록 가능)

- (증명서 발급신청) ① 소상공인24 → ② 마이페이지 → ③ 증명서 발급관리 클릭 → ④ 증명서발급신청 클릭 → ⑤ 등록 버튼 클릭 → ⑥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클릭 → ⑦ 수혜연도의 지원 유형 클릭 → ⑧ 하단의 발급신청 클릭

- (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)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업체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- (업체등록) ① 소상공인24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② 마이페이지 → ③ 기관/업체정보 클릭 → ④ 신규 업체등록 클릭 → ⑤ 「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」을 수혜 받은 업체정보(사업자등록번호) 등록

<유의사항>

(개인) 회원가입하신 분의 성함과 사업자대표 성함이 동일한 경우만 기관/업체 정보 등록 가능

(법인) 회원가입하신 분의 성함과 사업자대표 성함이 달라도 등록 가능
(법인 실무자 또한 기관/업체정보 등록 가능)

- (증명서 발급신청) ① 소상공인24 → ② 상단 “증명서 발급”탭 → ③ 좌측 목록 - “증명서 발급 신청” 클릭 → ④ 기업가형 소상공인 확인서 선택 후 “발급신청” 클릭 → ⑤ 좌측목록 “증명서 발급 현황” 탭에서 확인 및 인쇄

- (브랜드K)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판로개척팀(02-6678-9313~9315)에 문의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- (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) 입상여부에 대해서만 체크해주시면 증빙서류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 - (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) 해당여부만 체크해주시면 증빙서류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 - (디지털 특성화대학 / 글로벌패키지 / 해외쇼핑몰) 해당여부만 체크해주시면 증빙서류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그 외 문의사항은 아래 사업별 문의처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사업별 문의처>

구분	가점 항목	문의처	기관
1	백년 소상공인	042-363-7754, 7609	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
2	로컬크리에이터	042-363-7735, 7736	
3	디지털특성화대학	042-363-7825, 7826	
4	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	042-363-7723, 7824, 7837	
5	해외쇼핑몰 입점지원 / 글로벌패키지	042-363-7822, 7823, 7824	
6	브랜드K	02-6678-9313, 9314, 9315	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
7	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	02-6678-9372, 3973	

12. 글로벌 쇼룸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까요?

- ☐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하는 ‘온라인 판로지원사업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국내 판로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로지원을 희망하신다면, 아래의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사업명	연락처
1	상품개선지원	02-6678-9873 / 9878 / 9879
2	콘텐츠제작지원	02-6678-9871 / 9876
3	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02-6678-9452 / 9455
4	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	02-6678-9469
5	라이브커머스 제작, 운영지원	02-6678-9465 / 9468
6	로컬상품관 입점지원	02-6678-9467
7	SNS 활용패키지	02-6678-9862 / 9865
8	홍보 지원	02-6678-9867
9	스마트물류 및 사후관리 지원	02-6678-9859 / 9864 / 9868 / 9869
10	O2O 융합 판매 기획전	02-6678-9894 / 9895
11	직매입	02-6678-9458
12	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	02-6678-9363 / 9367
13	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	02-6678-9364 / 9368
14	브랜드 역량강화	02-6678-9863 / 9866

첨부4

소상공인 확인 방법

< ① 상시근로자수(5/10인 미만) + ② 소기업 매출조건 충족 ➡ 소상공인 >

(유의) 소상공인 사전 확인용 참고 자료로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여부와는 무관함

① (상시근로자수)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업 종	기 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*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**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**

참고 : <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>

<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 및 제7조>

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

<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>

① 임원* 및 '소득세법 시행령'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

* 법인의 대표이사, 등기임원 및 감사(사외이사 제외), 개인기업 대표

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
* 근로계약서 등 확인

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*의 연구전담요원

* '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'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

**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.오프라인 발행)와 연구개발인력현황(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) 제출받아 확인

④ 단시간근로자*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
* '근로기준법'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
** 근로계약서 등 확인

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석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비고		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		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		

첨부5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인 운영자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>

예외규정에 따라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,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 단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0조(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)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(부가세 포함) 합계액(가격합계액)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. 단,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
- ③ 상기 ①,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·지급 명세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지원 불가

수출성장성 평가표

– 22 –

「글로벌 쇼룸」 참가 동의서

당사는 주관기관 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’과 수행기관 ‘(주)리프이노베이션’이 운영하는 “글로벌 쇼룸”에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다 음

1. 당사는 주관기관과 수행기관, 그리고 참여기업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쇼룸 사업에 신의성실로 참여하고 수출계약 등 성과창출과 국위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2. 당사는 실적 제출요청, 만족도 조사 참가 등 사업운영에 관한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.
3. 당사는 사업 참여에 관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만일 정부·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중복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.
4. 당사는 참여기업으로 선정 후 임의적인 참가 취소 시, 기 발생한 비용(참여기업 부담금, 항공비, 숙박비 등)에 대해 전액 당사가 책임을 질 것이며, 향후 귀 주관기관의 사업 참가 제한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.
5. 당사는 국고지원을 받은 소요비용에 대해 향후 부가세 환급 및 기타의 세금공제 등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

2025. . .

기 업 명 :

대 표 자 : (인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